

##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 국가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공정성을 중심으로 -

202210602 박지민

- 목차 -

1. 서론
2. 개인사생활과 국가의 공공의 목적과의 충돌
3.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4. n번방 방지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5. 결론
6. 참고 문헌 및 기사

## 1. 서론

2020년, 온 나라를 충격과 분노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터졌다. 이름하여 바로 n번방 사건. 당시 이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었던, 범죄자들 사이에서 박사라고 칭해지던 조주빈은 수백여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들의 나체사진 및 관계 몰카 영상들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이라는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서 수백여명의 범죄자들과 그 채팅방에 영상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심지어 그영상을 가지고 여성들을 협박하여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였고, 이런 비슷한류의 사건 재발을 위해 소위 n번방방지법이 만들어져 그해 말쯤 국회본회의에 통과가 되면서 공포되었다.

하지만 법이 공포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선 불만과 비난의 목소리가 일다랐는데, 바로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의 등의 채팅내에서 공유되는 각종 파일과 영상들을 특정 기준을 정하여 감시하고 그 기준에 위배될시에는 n번방방지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기 때문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고, 일부 사람들은 헌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사생활의 보호 및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밖에 볼수가 없는 이 n번방방지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공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유포방지를 위해 이러한 행위들이 어디까지 정당화 될 수가 있는지, 국가가 개인정보 수집을 한다는것에 대해서 확실한 명분만 내세우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 2. 개인 사생활과 국가의 공공의 목적과의 충돌

헌법 제17조에 의거하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또한, 헌법 제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등 즉, 어떤 명분이나 이유등을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여도 한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각종 인터넷 상의 개인개시물등을 감시하고 침해하여 재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헌법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조항들로 만들어진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 에서도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잘 나타나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거“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이러한 법조항들의 내용이야 말로 한 개인의 사생활, 개인정보등의 보호 및 감시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한 것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허나 국가는 새로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시행하여 그중 제30조 6항에서의 “이용자가 개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교, 식별후 그 정보의 개재를 제한한다”의 내용등의 조항들을 내세워 각종 오픈채팅방 및 커뮤니티의 개시물을 검열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성착취물 유포를 위해서이다.”, “국민의 인권 및 자유보장을 위해선 불가피하다.” 라고 말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도한 사생활침해 라며 따까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sup>1)</sup> 무분별한 인터넷 검열이라는 인식이 없어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이 때문일 것이다.

### 3. n번방방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n번방 방지법이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은 맞으나, 이러한 검열 대상은 개인간의 사적인 대화 채팅방 내에서도 검열 행위가 벌어진다 라고 오해하고 있고, 이는 사실이 아니며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나 카페, 커뮤니티에서 주로 적용되는 사항인 뿐더러, 게시물이 공유가 되면 특정 누군가가 직접 그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 또는 삭제 요청이 있을때에만 적용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즉, 무턱대고 개인의 단독채팅방 에서의 게시물까지 검열하고 재재하며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엄연히 헌법 상에서도 명시된 사생활침해 및 통신의 자유 박탈과 무분별한 커뮤니티에서의 게시물 공유재 재 또한 오해이며, 이 또한 명백히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출판 및 개시의 자유를 억압 하는 행위이므로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n번방사건의 경우에도 범죄의 주무대가 된 텔레그램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해당 채팅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입장하여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만든 n번방 방지법은 이런 텔레그램 같은 오픈된 채팅방에서의 성착취물 유포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것일뿐, 결코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침해하며 출판의 자유를 막기 위한 법이라는 의미는 결코 이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다수의 언론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불안 여론 조성이 화를 키운다고 말하기도 한다.<sup>2)</sup>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n번방 방지법이 공개채팅방 검열은 곧 국민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수 있으며 심지어는 동물영상 이나 사진등의 이번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게시물 공유도 국가가 막고 있다며 통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맹 비난하고 있기도 한다.<sup>3)</sup>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번 사건의 화두가 된 공공채팅에서의 검열은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고, 오픈채팅에서의 동물 영상 게시물의 검열은 단지 불법촬영물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기계가 판별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치지 않을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드릴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sup>4)</sup> 앞.뒤 전후사정 가리디 않고 무작정 악법이라 칭하고 국민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언론사와 정치인들의 행태는 한 두번이 아니다. 무조건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 국민들에게 법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고 일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우리 언론과 정치인들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1)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210500047>

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170>

3)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8440](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8440)

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656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656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4. n번방 방지법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필자는 이러한 반론들을 주장할 수 있다. 일단 과연 ‘검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어사전에서는 ‘각종 출판, 연극, 우편물 등의 내용들을 미리 살피고 조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sup>5)</sup> 이러한 의미는 즉슨, 방통위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과정이라 일컫고 있는 이른바 ‘필터링’이라는 과정 자체도 검열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 기관 여기서 소위 방통위에서 특정 기준을 정하여서 필터링이라는 과정을 기계로 하든, 사람이 직접 하든지 간에 결국은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감시 및 통제하는 행위 그 이상, 이하로도 안볼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서 소개하였던 헌법 제17조 및 제18조의 조항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어긋나는 행위로 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는 결국 공익추구 및 자신들의 목표 추구를 위해서 헌법조항을 어기고 개인정보 수집을 강행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현행 n번방 방지법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은 어찌보면 쓸쓸한 기분까지도 든다.

사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n번방 방지법탄생에 원인이된 n번방사건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등의 국내 웹사이트가 아닌 텔레그램이라는 외국의 채팅사이트에서 범죄가 발생된 사건인데, 정작 텔레그램에서는 적용되기가 힘들고 국내 채팅 사이트에서의 규제만 더 강화됐다는 점은 참으로 기가막힐 따름이고<sup>6)</sup> 이 법안의 실효성 및 존재성 자체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방통위에서는 “해외 사이트에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건을 정리하고 검거하는 일이나 인터폴 수사등은 한계가 있어 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나 이 법자체가 왜 공포 되었고 지금 이순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피해자들을 고려하면 이런 인터폴 수사 및 국외사이트 검열등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법안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큰 관련이 없는 카카오톡, 즉 오픈채팅방 폰즈 각종 국내 커뮤니티들을 검열하는 행위는 사건 재발을 막을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n번방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또다시 최근에 발생하였다는 점<sup>7)</sup>에서 과연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들고 오히려 정작 현 범죄자 들에게는 ‘해외사이트는 안전하고 잡히기 힘들다’,라는 인식을 주어 또다른 해외 채팅 사이트를 찾아서 언젠가 제2의 n번방사건이 더 큰 규모로 터질수 있다는 우려를 필자가 들게 하는 이유이다. 국가가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더욱 폭넓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또는 신규 법안 추가등의 노력을 기울려야 이 법의 실효성이 조금이나마 부각 될 수있을 것이다.

5)<https://ko.dict.naver.com/#/entry/koko/bfa35e1f07f74ad495c00379d102ea0c>

6)<https://www.sedaily.com/NewsView/22V91JYMZC>

7)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9272](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9272)

## 5. 결론

사실 이러한 n번방사건 같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죄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여 지금의 관련된 법률조항을 강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라는 존재 자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존하고 그러기위해 법을 개정하고 추가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허나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헌법규정을 건들이는 해위는 용납 되서는 아니될 것이다. 헌법이라는 것 자체는 법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며, 국민의 인권보호의 기초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초조항 중 하나인 국민의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행위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 n번방 방지법 자체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이 사건의 주 무대이자 재발 위험이 상당히 높은 텔레그램같은 해외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이에 따른 처벌도 더 강화가 되어야 조금이나마 재발방지가 될 것이다.

국민들 그 누구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간섭받고 그러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조롱받고 비난받는 상황은 원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은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n번방 방지법도 마찬가지이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악법, 사생활 감시라는 말이 안 나돌도록 법안 개편이 절실하며, 여타 추가의 법조항들을 만들때에도 사생활침해 뿐만이 아닌 헌법의 조항과 충돌되는 법안공포는 삼가야 법과 국민들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 질 수있을 것이다.

## 6. 참고 문헌 및 기사

- 풀커키츠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part.2 나란 존재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2020
- 대한민국 헌법 제16·17·21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6항
- 임재덕, 《'n번방 방지법' 시행 첫날...“이제 사적 대화도 검열하겠네 우려 확산”》 《아시아타임즈》,(2021.12.10.)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1210500047>
- 노지민, 《'n번방 방지법', 선동보다 반정부터》, 《미디어오늘》,(2021.12.14.)  
[www.asiatime.co.kr/article/20211210500047](http://www.asiatime.co.kr/article/20211210500047)
- 《불법 촬영물 된 고양이 영상...'n번방 방지법' 논란》,《jtbc》,(2021.12.10.)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8440](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38440)
- 《거짓주장 선동하며 'n번방 방지법'을 악법으로 몰고 간 언론》  
《오마이뉴스》,(2021.12.2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6569&CMP\\_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6569&CMP_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검열,《네이버 어학 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bfa35e1f07f74ad495c00379d102ea0c>
- 박현익, 《N번방 방지법 시행에 텔레그램은 나몰라라...에먼 카카오만 규제》  
《서울경제》,(2021.12.1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91JYMZC>
- 윤정주, 《“몸에 내 이름 쓴 사진 보내라”n번방처럼 협박》, 《jtbc》,(2022.05.17.)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9272](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9272)

- <<‘n번방 방지법’으로 우려되는 사적 검열의 진실! 방통위가 알려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블로그>>.(2020.05.18.)  
<https://blog.naver.com/kcc1335/221968846215>
- <<디지털 성범죄물, 필터링 기술로 유통 방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블로그>>.(2021.09.16.)  
<https://blog.naver.com/kcc1335/222506627351>